

## 한변 등,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등 제기

**일 시 : 2020. 1. 14.(화) 14:00**

**장 소 : 헌법재판소 앞**

1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일 법률 제16863호로 구랍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「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, 공수처법)을 공포하였다. 그러나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화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·보임 허가,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, 법적근거 없는 4+1 결합체에 의한 원안내용 일탈한 수정안 상정 등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.
2. 그 법안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.  
가. 공수처는 설치근거도 없이 수사권, 영장 청구권,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 하여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,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 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하여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다.  
나. 수사기관의 즉시통보의무(공수처법 제24조 제2항), 수사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완화(제10조 제1항 제3호), 공수처 요청시 수사기관의 이첩의무(제24조 제1항) 등 규정은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헌법상의 최고 수사기 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하고, 위임의 한계나 제한이 없는 수사처규칙(제45조)까지 제정할 수 있 게 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하였다.  
다. 공수처 검사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갖는 검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,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가 퇴직 한 경우도 포함시켰으나 퇴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. 검찰의 일부 기능을 떼어 서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국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, 검사와 비검사 출신 사이의 평등권 을 침해하고 있다.
3. 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(제66조 제2항),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 유와 복리를 증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였으므로(제69조) 마땅히 공수처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(제 53조 제2항) 국회에 환부, 재의를 요구했어야 한다.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러한 임무를 방기하고, 나아가 위헌적 법률의 성안을 배후에서 조종, 독려하였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속 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.
4.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사찰기구 아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 추구권(제10조), 평등권(제11조 제1항), 적법절차에 따른 피보호권(검사에 의한 영장청구, 제 12조 제3항, 제16조), 자기책임의 원리(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, 제13조 제3항), 직업선택의 자유(제15조), 공무담임권(제25조) 등을 침해당하게 되었다.
5.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에 내놓기도 민망한 반인반수(半人半獸)의 괴물로서 그 위헌 성이 너무나도 크고 뚜렷하여 긴급하게 공수처법안 공포행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을 비롯 한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법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기대와 권리를 침해당하고, 자존심 에 대한 상처와 민주 헌정의 위기, 독재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를 입게 되고, 고위공직자의 전반적인 업무 행태를 스스로 옥죄게 하므로 이러한 악법은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. 독사의 알은 일일 때 깨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.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.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방치한다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어둠의 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.

2020. 1. 14.

**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(한변),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(정교모)**